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일하는 사람의 생명·건강 보호는 기본적인 경영자의 의무입니다

2020년 한 해에만 2,062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이며,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헌법 제32조제1항]

-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이하 생략)
-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헌법재판소 2007.8.30. 2004헌마670 전원재판부]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바,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

안전보건관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며, 경영의 일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의 현장 관리·감독
위한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안전·보건 법령상 의무 이행 관리상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안전조치, 보건조치

기계·설비나 위험 물질 등에 대한 안전조치

- 예) 폭발성 물질 제조 시 방호조치 등

원재료·가스·위험작업 등에 대한 보건조치

- 예) 5kg 이상 중량물 안내표시, 손잡이 부착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안전조치, 보건조치 의무

산업재해 예방 달성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의무내용

경영책임자 등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
- ②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 ③ 중앙행정기관 등이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조치
- ④ 안전·보건관련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처벌수준

자연인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부상·질병)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사망)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10억원 이하 벌금

사업주의 안전조치

- ① 위험기계나 폭발성 물질 등 위험물질 사용 시
- ② 굴착·발파 등 위험 작업 시
- ③ 추락·붕괴 우려 있는 등 위험 장소에서 작업 시

사업주의 보건조치

- ① 유해가스나 병원체 등 위험물질
- ② 신체에 부담을 주는 등 위험 작업
- ③ 환기·청결 등 적정기준 유지

자연인

(사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치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인

(사망) 10억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치위반) 5천만원 이하 벌금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기업 본사 수사 및 경영책임자 처벌
법상 의무 준수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숙지·준수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주체	자연인인 경영책임자 - 법인은 <u>양벌규정</u> 으로 처벌	사업주를 의무 주체로 규정 - 다만, 현장소장, 공장장 등 각 사업장 단위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행위자로 처벌
보호대상	종사자: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 영 제67조)
적용범위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제외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50억 미만 공사는 3년 후 시행)	전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업종·규모 등에 따라 일부 적용 제외)
재해정의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u>질병</u> 자 1년 내 3명 이상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u>질병</u> 자 동시 10명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반복되는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로 사망사고 지속

'20.5.21. 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20.4.29.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18.12.11.
화력발전소
암사사고



'21.6.9.
광주 재개발



'14.4.16
세월호 사건



'95.8월.~ '11.5.8~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중대재해사고를 예방하여
근로자·종사자, 일반 시민의
안전권 확보 필요

	중대산업재해(법 제2조 제2호)	중대시민재해(법 제2조 제3호)
의무주체	자연인인 경영책임자 - 법인은 <u>양벌규정</u> 으로 처벌	자연인인 경영책임자 - 법인은 <u>양벌규정</u> 으로 처벌
보호대상	종사자 :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적용범위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제외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50억 미만 공사는 3년 후 시행)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종사자 고용 여부 무관)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50 <u>억원</u> 미만 공사는 3 <u>년</u> 후 시행)
재해정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 산업재해: 업무와 관계된 설비·원재료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한 노무제공자의 사망·부상·질병	특정 원료 또는 <u>제조물</u>,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패러다임의 전환**

법제정 목적

경영책임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투자를 확대하고
안전 및 보건 조치가 실효성을 갖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 하는 것

처벌규정의 목적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

-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처벌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님

☞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에 관심을 갖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여 산업안전보건의 질을 높이라는 메시지

중대재해처벌법의 **지향점**



기업에게 법령이 정한 기준으로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



즉, 경영책임자가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를 하듯이
안전도 경영의 일부라는 인식하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라는 취지

“중대산업재해” 란?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아래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

- ① 사망자 1명 이상
-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 직업성 질병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던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기준 마련]



24가지 질병을 직업성 질병으로 규정

- ①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카리류, 가스 상태 물질류, 허가 대상 유해물질, 금속가공유 등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1~13호)
- ② 렙토스피라증,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급성 중독에 준하는 질병(14~24호)

“종사자” 란? “사업주” 란

종사자

-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이 된 경우
– 각 단계의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노무를 제공하는 자

사업주

-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 ☑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경영책임자” 란?

경영 책임자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대내적으로 사무를 총괄하여 집행, 대외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표

* 예) 기업의 대표이사, 단체 등의 이사장, 기관장 등

– 형식상 직위·명칭에 관계 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① 직무, ② 책임과 권한, ③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사업의 대표자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사업 전반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관한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

📖 형식적으로 안전보건담당이사 등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관련 예산, 인력 조직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음

법 적용범위 및 시행일

적용 범위

- ☑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시행일) 2022.1.27.

적용 유예

- ☑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 ☑ 건설업 중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시행일) 2024.1.27.

참고

상시근로자 수의 판단과 산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text{상시근로자} = \frac{\text{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text{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

산정 원칙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
산정 대상 근로자 범위	근로기준법에 따라 <u>상시근로자</u> 수를 산정 -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 불문 포함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4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 위임

6-1-①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목표와 경영방침이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에 관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 방향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방법

-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유해위험요인, 규모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내용이어야 함
- ②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것이어야 함
- ③ 종사자 등 구성원이 공감 할 수 있어야 함

6-1-② 안전 및 보건 업무 총괄·관리 전담 조직 구성·운영

안전 및 보건 업무 총괄 전담 조직

- 경영책임자가 현장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관리하는 수단으로서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업무에 관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함

전담조직 설치 대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를
총 3명 이상 두어야 하는 기업으로서

- ①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②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6-1-③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유해·위험 요인 확인·개선하는 업무 절차 마련



절차에 따른 확인·개선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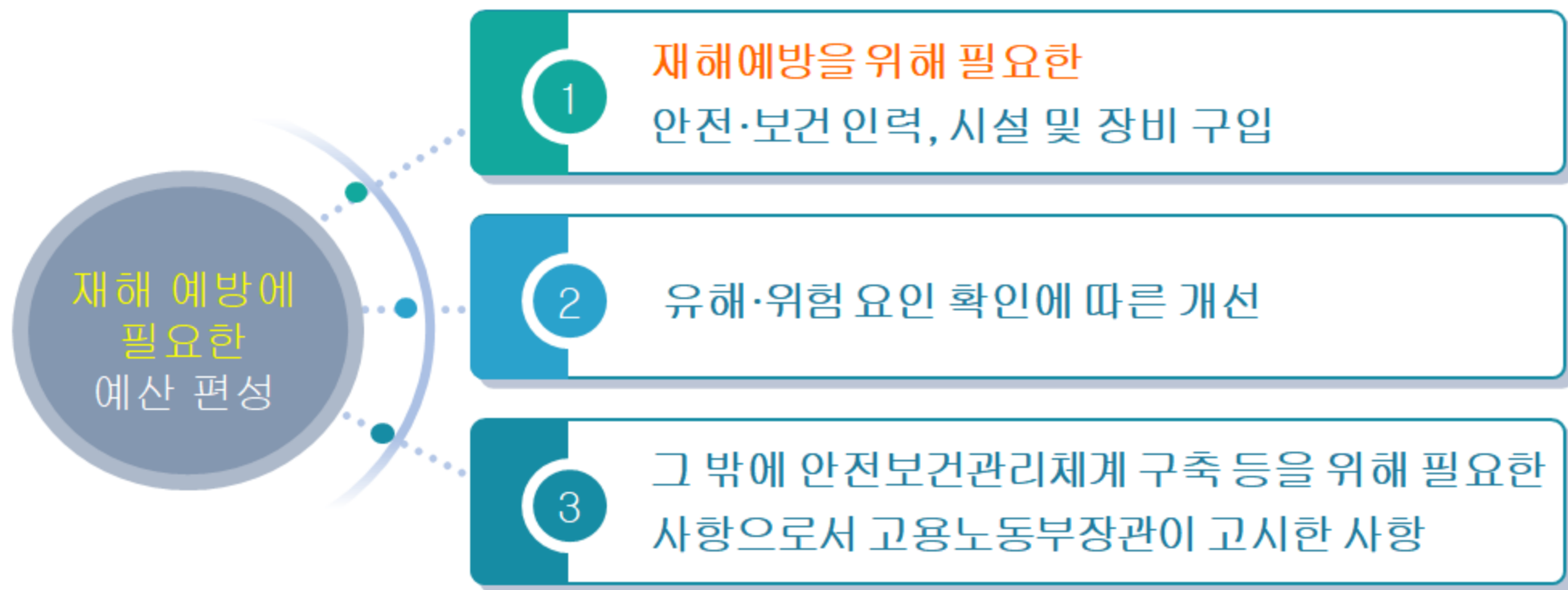


점검 후 필요한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 절차 도입, 그 절차에 따라 평가, 결과를 보고 받은 경우 ⇒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간주

6-1-④ 안전 및 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되도록 함



6-1-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한 조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

- ①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 및 예산 부여
- ② 해당 평가 기준 마련
- ③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

안전·보건관리 담당 인력의 역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업무 총괄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지휘·감독
관리감독자	생산공정 단위의 안전·보건관리 및 소속 직원 지휘·감독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 총괄·관리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 ①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②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③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④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⑤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⑥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⑦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⑧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⑨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⑩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건강장해 방지 사항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 ①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② 관리감독자 소속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 점검,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③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④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과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⑥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에 참여
- ⑦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

- ①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②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및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작업의 중지
- ③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 ⑤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6-1-⑥ 안전 및 보건 전문 인력 배치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 배치
-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안전·보건에 업무 수행시간 보장
- 다만, 다른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르게 배치할 수 있음
 *예)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산업보건의는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기업규제완화법 제28조)

Ⅰ <주요 업종의 전문인력 배치기준>

제조업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50명 이상) 1명 이상, (500명 이상) 2명 이상
건설업	안전관리자	(80억원 이상) 1명 이상, (800억원 이상) 2명 이상
	보건관리자	(800억원 이상, 600명 이상) 1명 이상
그 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5개업종 한정: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	(20명 이상 50명 미만) 1명 이상
	산업보건의 * 제외: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한 경우,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	50명 이상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6-1-⑦ 종사자 의견 청취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 의견 청취



개선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 마련·이행



반기 1회 이상 이행상황 점검 및 필요 조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 협의체, 노사협의체에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거나 심의·의결을 한 경우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간주

6-1-⑧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조치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

- ①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및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②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③ 추가 피해방지 조치



매뉴얼상의 조치상황을 반기 1회 이상 점검

6-1-⑨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기준·절차 마련 및 점검

1

수급인 등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절차 마련**

2

수급인 등의 안전 및 보건 관리 **비용에 관한 기준**

3

건설업·조선업: 안전·보건 위한 **공사기간/건조기간 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아래 7가지 핵심요소를 고려하여 구축합니다

① 경영자리더십

경영자가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② 근로자 참여

모든 구성원이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③ 위험요인파악

작업환경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④ 위험요인 제거 대체 및 통제

위험요인을 제거·대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⑤ 비상조치계획 수립

급박히 발생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⑥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확보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의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⑦ 평가및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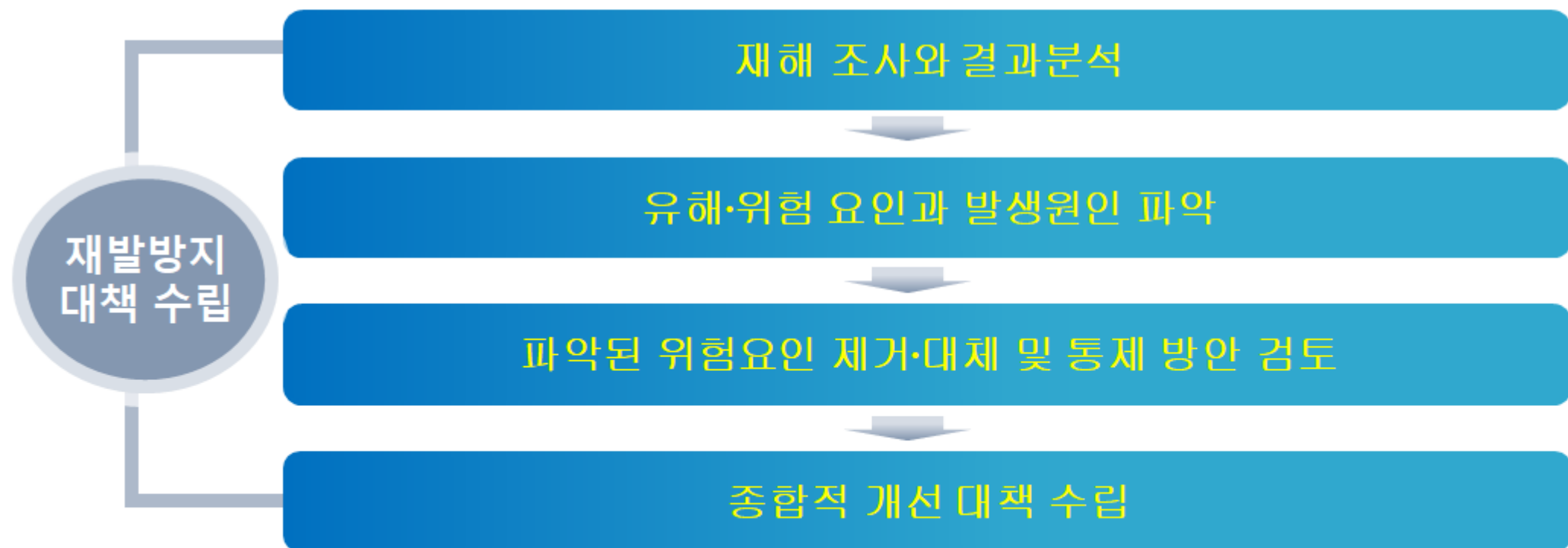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참고

①	경영자 리더십	-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목표를 정합니다. - 안전보건에 필요한 자원(인력·시설·장비)을 배정합니다. -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참여를 독려합니다.
②	근로자의 참여	-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합니다.
③	위험요인 파악	- 위험요인에 따른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합니다. -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를 조사합니다. - 위험기계·기구·설비 등을 파악합니다. - 유해인자를 파악합니다. - 위험장소 및 작업형태별 위험요인을 파악합니다.
④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 위험요인별 위험성을 평가합니다. -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검토합니다. -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합니다. - 교육훈련을 실시합니다.
⑤	비상조치계획 수립	-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 '재해 발생 시나리오'별 조치계획을 수립합니다. - 조치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훈련합니다.
⑥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선정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시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⑦	평가 및 개선	-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합니다. - 발굴된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합니다.

6-2-① 재해의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의 의미: 중대산업재해는 물론 경미한 산업재해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



6-3-① 개선,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이란 ?

-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처분인 시정명령 등

이행 대상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근거한 처분'

6-4-① 안전보건관계 법령 이행 여부 점검 및 필요한 조치

안전보건관계법령: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

-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광산안전법, 선원법, 연구실안전법 등
- 개별 규정에서 근로자 등의 안전·보건확보를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확인·점검

-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 점검완료 후 지체 없이 결과를 보고받을 것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 점검 가능



이행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인력, 예산 등 추가 편성·집행 등 이행에 필요한 조치

6-4-②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 확인 및 필요한 조치

안전보건관계법령: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

-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광산안전법, 선원법, 연구실안전법 등
- 개별 규정에서 근로자 등의 안전·보건확보를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등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확인·점검

-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 점검완료 후 지체 없이 결과를 보고받을 것



미실시 교육 지체없이 이행 지시,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

7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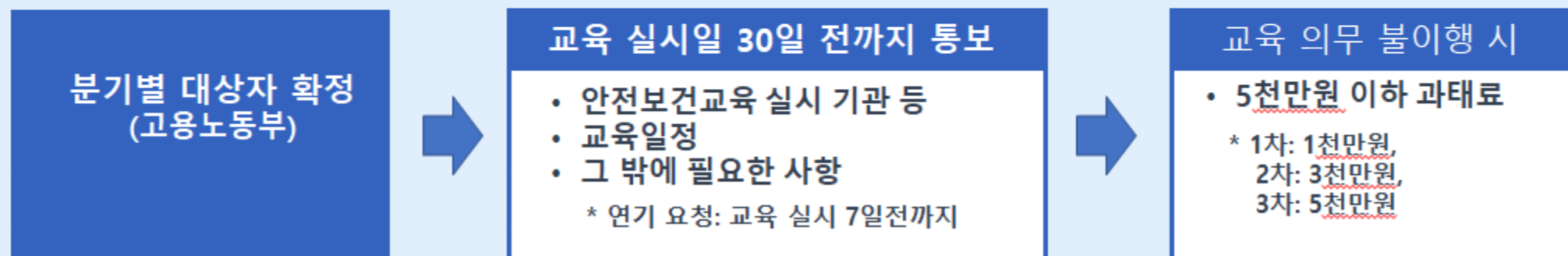
도급·용역·위탁 등을 한 경우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수급인과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함

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들은 안전보건교육 이수

교육내용	<u>안전보건관리체계</u> 구축 등 안전·보건 경영 방안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방안
교육시간 및 비용	총 20시간 범위 교육비용은 교육대상자가 부담
교육 실시기관	안전보건교육기관 * 「 <u>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u> 」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 <u>산업안전보건법</u> 」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기관

| 안전보건교육 진행 절차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및 양벌규정

경영책임자 처벌

-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종사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종사자가 부상 또는 질병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형 확정 후 5년 이내 다시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치사상죄를 저지른 경우
 - 2분의 1까지 가중

양벌규정

- ☑ 경영책임자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형 부과(科)
 - 제6조제1항 위반: 50억원 이하의 벌금
 - 제6조제2항 위반: 10억원 이하의 벌금
- ☑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대 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범죄의 형이 확정 통보된 사업장

☑ 공표 전 해당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공표 내용 통지, 소명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30일 이상 기간 내)

☑ **방 법** 관보,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공표 기간: 1년

공표 내용

- 해당 사업장의 명칭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 · 장소
-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
- 중대산업재해 내용과 원인, 위반 사항
-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제1장

총칙

적용범위 정부의 책무, 사업주/근로자 의무, 산재발생건수 공표

제2장

안전보건
관리체제 등

제1절 이사회 보고및승인,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장

안전보건
교육

근로자 교육(근로자, 관리감독자,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교육, 직무교육(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전문기관 등)

제4장

유해위험
방지조치

법령요지 게시, 위험성평가, 안전보건표지, 안전조치, 보건조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안전보건진단, 안전보건개선계획, 사업주/근로자 작업중지, 중대재해발생시
작업중지, 산재은폐

제5장

도급시 산업
재해 예방

제1절 도급금지, 도급의 승인/하도급금지,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3절 건설업 산재예방(발주자 의무, 안전보건조정자, 협의체 운영 등)
제4절 특수고용형태 산재예방(특수형태, 배달종사자, 가맹본부)

제6장

유해위험
기계 조치

제1절 유해/위험 기계의 방호조치,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체 등록
제2절 안전인증(기준, 표시, 취소, 인증기관)
제3절 자율안전확인신고 제4절 안전검사 제5절 조사, 지원 등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제7장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제2절 석면에 대한 조치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제9장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등

제10장

근로감독관등

근로감독관의 권한,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등

제11, 12장

보칙(벌칙, 과태료)

영업정지의 요청 등, 과징금, 벌칙, 양벌규정,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과태료

이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산업안전보건) 등 하위법령 다수

산업안전보건법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 확립 : 위험과 건강장해의 예방 기준 확립
2. 책임 소재 명확화 :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형사 처벌
3.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목표(구체적)
4.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 : 목적(궁극적)

※ (전면개정)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변경 ⇒ 사업주와 직접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 이외의 자까지 적용범위를 확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배달원, 가맹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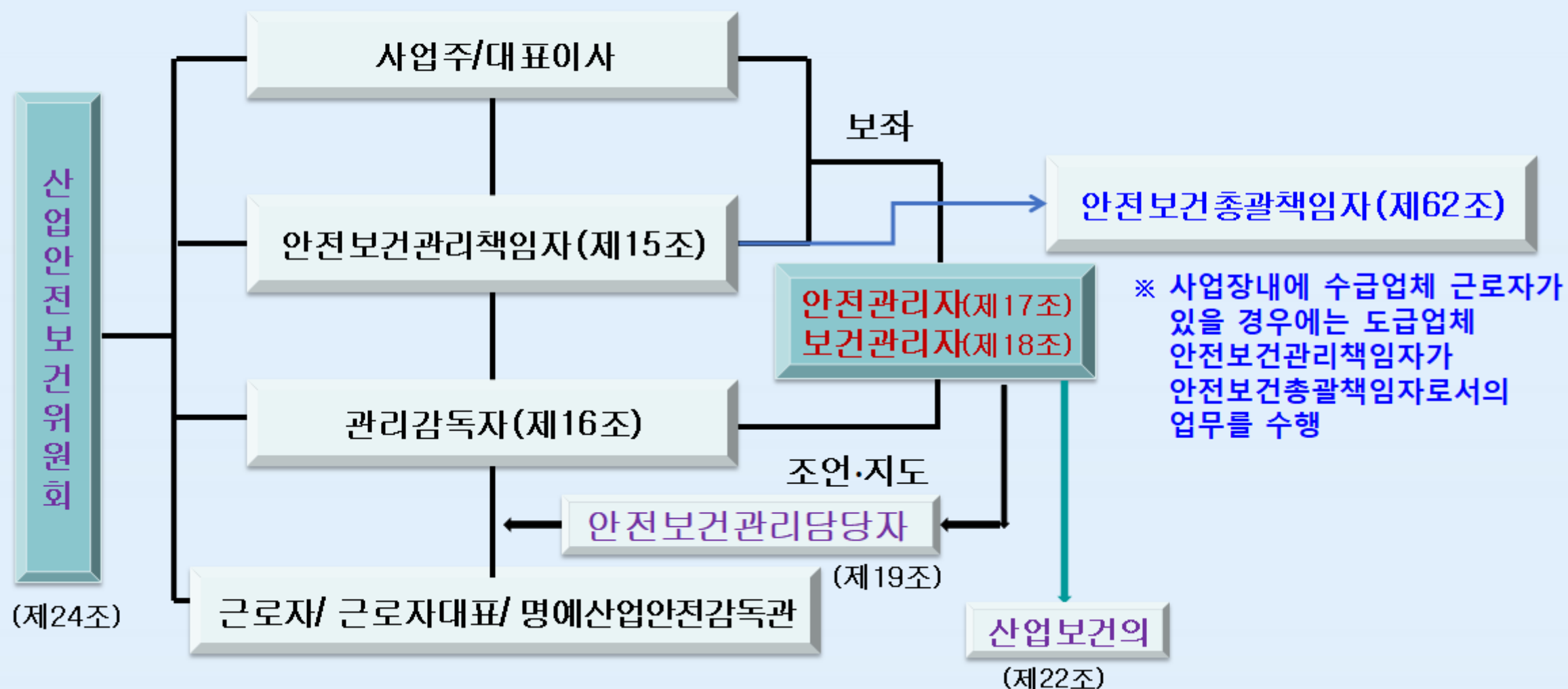
제1조(목적)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 10명 이상 발생 한 재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와 유사한 개념으로 ‘업무상 재해’를 규정함. 이는 업무 수행성과 기인성을 구성요소로 출·퇴근시 발생한 재해까지도 포함하여 ‘산업재해’보다 범위가 넓음

3.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4.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

산업안전관리 체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단위(사업장)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적용되며,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하되, 독립된 업무처리 능력(근로조건 결정의 독자성,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 예산·회계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별도의 사업장으로 판단
 - ※ 지점, 영업소 등의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등 업무처리 능력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봄
-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법인인 사업주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면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됨
 - ※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중 초등, 중등, 고등 교육기관 등은 안전보건관리 체제 중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은 적용 제외(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 과태료: 1차 ~3차 각500만원, 미개최 1차 50만원(매회당), 심의의결 불이행 1차 50만원
 사업주는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야 함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3. 안전보건교육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중대재해에 한함)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
8. 그 밖의 사항 (유해, 위험 기계/기구/설비 도입할 때 안전보건조치 사항 등)

- ※ ▶ 분기별로 정기적 회의를 개최, 회의록 작성, 보존해야 함
 ▶ 사업주와 근로자는 심의, 의결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을 심의, 의결해서는 안됨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제2장 제2절(안전보건관리규정)

사업주는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 과태료: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각500만원

①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2. 안전보건교육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
4.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5. 그 밖에 안전보건 사항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 과태료: 1차 50만원, 2차 250만원, 3차 각500만원
규정을 작성,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위원회 설치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7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29조(근로자안전보건교육)* 과태료: 미 실시 1인당 1차 50만원(10만원), 2차 250만원(20만원), 3차 500만원(50만원) 등

-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시켜야 한다.
- ② 근로자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 변경할 때, 해당 작업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③ 유해·위험 작업에 배치하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교육(특별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제3항 교육은,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 ① 법 제29조의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 이 경우 법 제29조제3항의 "특별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채용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③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강사교육과정 이수한 사람
 3.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4.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참고

안전보건교육 종류 및 실시방법

구 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내용
정기교육	생산직근로자 사무직근로자 관리감독자	매분기 6시간 이상 매분기 3시간 이상 연간 16시간 이상	①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②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등 <u>* 관리감독자 교육시간의 1/2 이상은 집체교육으로 실시</u>
채용 시 교육	생산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8시간 이상 1시간 이상	①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② 작업개시전 점검에 관한 사항 등
작업내용 변경교육	생산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2시간 이상 1시간 이상	①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② 작업개시전 점검에 관한 사항 등
특별안전 보건교육	생산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16시간 이상 2시간 이상	① 공통교육 ② 개별내용(유해위험 38개 작업별 개별교육) 등

※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자

※ **생산직근로자란?** 사무직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 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

참고

1. 근로자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현장 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및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교육은 별표 4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받아야 하는 전체 교육시간의 3분의 1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참고

◇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 : 정기 안전보건교육시간의 1/2 이상 실시 가능
 -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 신규채용 또는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면제
 -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경우 : 채용시교육 또는 특별교육 일부 면제
 -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시행하는 산재예방활동 + 교육 참가시 : 해당시간 면제
 - 관리감독자가 직무교육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
 - 안전보건 전문교육 과정에 참여하여 교육 이수한 경우(예, 안전보건교육원 교육)
- ※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법정교육 받은 경우 해당 시간 만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봄

참고

◇ 안전보건교육 관련 주요 행정해석

- ▶ (교육내용의 준수) 매일 작업 시작 전 출근점검, 승차가능 여부, 열차안전 운행에 따른 지시, 유인물 형태의 교육용 자료의 게시 등의 내용은 작업을 위한 준비 또는 작업에 필요한 과정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이를 교육으로 보기는 곤란함(2000.11.18. 안정 68301-1216)
- ▶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의 입증)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 대해 매월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실시 결과를 특정 서식을 정해 기록,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교육 실시 근거자료는 임의 서식에 의거 작성, 보관하여도 무방하지만,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확인하고자 할 경우 그 실시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2004.3.2. 안전정책과-1188)
- ▶ (교육실적 보존기간 및 법적 근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과태료 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교육실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교육실시 관련 서류를 문서 또는 전산입력 자료의 형태 여부에 관계없이 보존하였다가 그 사실 여부를 증명하여야 함(2009.12.30. 안전보건정책과-4817)

법령요지 등의 게시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과태료: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250만원, 3차 500만원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주요 내용

- 제 57 조(산업재해 발생 통계 집계 및 보고)
- 제 34 조(법령요지 게시)
- 제 37 조(안전표지의 부착 등)
- 제 16 조(안전보건관리규정)
- 제 18 조(안전보건관리규정)
- 제 19 조(안전보건관리규정)
- 제 38 조(안전조치)
- 제 39 조(보건조치)
- 제 43 조(도입인의 안전보건조치)
- 제 46 조(도입인의 관계 수급인에 대한 사항)
- 제 58 조(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의 안전조치)
- 제 29 조(안전·보건 교육)
- 제 80 조(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의 안전조치)
- 제 84 조(안전인원)
- 제 93 조(안전검사)
- 제 118 조(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제 119 조(직업안전)
- 제 122 조(직업안전)
- 제 124 조(직업안전)
- 제 125 조(직업안전)
- 제 126 조(직업안전)
- 제 127 조(직업안전)
- 제 128 조(직업안전)
- 제 129 조(직업안전)
- 제 130 조(직업안전)
- 제 131 조(직업안전)
- 제 132 조(직업안전)
- 제 133 조(직업안전)
- 제 134 조(직업안전)
- 제 135 조(직업안전)
- 제 136 조(직업안전)
- 제 137 조(직업안전)
- 제 138 조(직업안전)
- 제 139 조(직업안전)
- 제 140 조(직업안전)
- 제 141 조(직업안전)
- 제 142 조(직업안전)
- 제 143 조(직업안전)
- 제 144 조(직업안전)
- 제 145 조(직업안전)
- 제 146 조(직업안전)
- 제 147 조(직업안전)
- 제 148 조(직업안전)
- 제 149 조(직업안전)
- 제 150 조(직업안전)
- 제 151 조(직업안전)
- 제 152 조(직업안전)
- 제 153 조(직업안전)
- 제 154 조(직업안전)
- 제 155 조(직업안전)
- 제 156 조(직업안전)
- 제 157 조(직업안전)
- 제 158 조(직업안전)
- 제 159 조(직업안전)
- 제 160 조(직업안전)
- 제 161 조(직업안전)
- 제 162 조(직업안전)
- 제 163 조(직업안전)
- 제 164 조(직업안전)
- 제 165 조(직업안전)
- 제 166 조(직업안전)
- 제 167 조(직업안전)
- 제 168 조(직업안전)
- 제 169 조(직업안전)
- 제 170 조(직업안전)
- 제 171 조(직업안전)
- 제 172 조(직업안전)
- 제 173 조(직업안전)
- 제 174 조(직업안전)
- 제 175 조(직업안전)
- 제 176 조(직업안전)
- 제 177 조(직업안전)
- 제 178 조(직업안전)
- 제 179 조(직업안전)
- 제 180 조(직업안전)
- 제 181 조(직업안전)
- 제 182 조(직업안전)
- 제 183 조(직업안전)
- 제 184 조(직업안전)
- 제 185 조(직업안전)
- 제 186 조(직업안전)
- 제 187 조(직업안전)
- 제 188 조(직업안전)
- 제 189 조(직업안전)
- 제 190 조(직업안전)
- 제 191 조(직업안전)
- 제 192 조(직업안전)
- 제 193 조(직업안전)
- 제 194 조(직업안전)
- 제 195 조(직업안전)
- 제 196 조(직업안전)
- 제 197 조(직업안전)
- 제 198 조(직업안전)
- 제 199 조(직업안전)
- 제 200 조(직업안전)
- 제 201 조(직업안전)
- 제 202 조(직업안전)
- 제 203 조(직업안전)
- 제 204 조(직업안전)
- 제 205 조(직업안전)
- 제 206 조(직업안전)
- 제 207 조(직업안전)
- 제 208 조(직업안전)
- 제 209 조(직업안전)
- 제 210 조(직업안전)
- 제 211 조(직업안전)
- 제 212 조(직업안전)
- 제 213 조(직업안전)
- 제 214 조(직업안전)
- 제 215 조(직업안전)
- 제 216 조(직업안전)
- 제 217 조(직업안전)
- 제 218 조(직업안전)
- 제 219 조(직업안전)
- 제 220 조(직업안전)
- 제 221 조(직업안전)
- 제 222 조(직업안전)
- 제 223 조(직업안전)
- 제 224 조(직업안전)
- 제 225 조(직업안전)
- 제 226 조(직업안전)
- 제 227 조(직업안전)
- 제 228 조(직업안전)
- 제 229 조(직업안전)
- 제 230 조(직업안전)
- 제 231 조(직업안전)
- 제 232 조(직업안전)
- 제 233 조(직업안전)
- 제 234 조(직업안전)
- 제 235 조(직업안전)
- 제 236 조(직업안전)
- 제 237 조(직업안전)
- 제 238 조(직업안전)
- 제 239 조(직업안전)
- 제 240 조(직업안전)
- 제 241 조(직업안전)
- 제 242 조(직업안전)
- 제 243 조(직업안전)
- 제 244 조(직업안전)
- 제 245 조(직업안전)
- 제 246 조(직업안전)
- 제 247 조(직업안전)
- 제 248 조(직업안전)
- 제 249 조(직업안전)
- 제 250 조(직업안전)
- 제 251 조(직업안전)
- 제 252 조(직업안전)
- 제 253 조(직업안전)
- 제 254 조(직업안전)
- 제 255 조(직업안전)
- 제 256 조(직업안전)
- 제 257 조(직업안전)
- 제 258 조(직업안전)
- 제 259 조(직업안전)
- 제 260 조(직업안전)
- 제 261 조(직업안전)
- 제 262 조(직업안전)
- 제 263 조(직업안전)
- 제 264 조(직업안전)
- 제 265 조(직업안전)
- 제 266 조(직업안전)
- 제 267 조(직업안전)
- 제 268 조(직업안전)
- 제 269 조(직업안전)
- 제 270 조(직업안전)
- 제 271 조(직업안전)
- 제 272 조(직업안전)
- 제 273 조(직업안전)
- 제 274 조(직업안전)
- 제 275 조(직업안전)
- 제 276 조(직업안전)
- 제 277 조(직업안전)
- 제 278 조(직업안전)
- 제 279 조(직업안전)
- 제 280 조(직업안전)
- 제 281 조(직업안전)
- 제 282 조(직업안전)
- 제 283 조(직업안전)
- 제 284 조(직업안전)
- 제 285 조(직업안전)
- 제 286 조(직업안전)
- 제 287 조(직업안전)
- 제 288 조(직업안전)
- 제 289 조(직업안전)
- 제 290 조(직업안전)
- 제 291 조(직업안전)
- 제 292 조(직업안전)
- 제 293 조(직업안전)
- 제 294 조(직업안전)
- 제 295 조(직업안전)
- 제 296 조(직업안전)
- 제 297 조(직업안전)
- 제 298 조(직업안전)
- 제 299 조(직업안전)
- 제 300 조(직업안전)
- 제 301 조(직업안전)
- 제 302 조(직업안전)
- 제 303 조(직업안전)
- 제 304 조(직업안전)
- 제 305 조(직업안전)
- 제 306 조(직업안전)
- 제 307 조(직업안전)
- 제 308 조(직업안전)
- 제 309 조(직업안전)
- 제 310 조(직업안전)
- 제 311 조(직업안전)
- 제 312 조(직업안전)
- 제 313 조(직업안전)
- 제 314 조(직업안전)
- 제 315 조(직업안전)
- 제 316 조(직업안전)
- 제 317 조(직업안전)
- 제 318 조(직업안전)
- 제 319 조(직업안전)
- 제 320 조(직업안전)
- 제 321 조(직업안전)
- 제 322 조(직업안전)
- 제 323 조(직업안전)
- 제 324 조(직업안전)
- 제 325 조(직업안전)
- 제 326 조(직업안전)
- 제 327 조(직업안전)
- 제 328 조(직업안전)
- 제 329 조(직업안전)
- 제 330 조(직업안전)
- 제 331 조(직업안전)
- 제 332 조(직업안전)
- 제 333 조(직업안전)
- 제 334 조(직업안전)
- 제 335 조(직업안전)
- 제 336 조(직업안전)
- 제 337 조(직업안전)
- 제 338 조(직업안전)
- 제 339 조(직업안전)
- 제 340 조(직업안전)
- 제 341 조(직업안전)
- 제 342 조(직업안전)
- 제 343 조(직업안전)
- 제 344 조(직업안전)
- 제 345 조(직업안전)
- 제 346 조(직업안전)
- 제 347 조(직업안전)
- 제 348 조(직업안전)
- 제 349 조(직업안전)
- 제 350 조(직업안전)
- 제 351 조(직업안전)
- 제 352 조(직업안전)
- 제 353 조(직업안전)
- 제 354 조(직업안전)
- 제 355 조(직업안전)
- 제 356 조(직업안전)
- 제 357 조(직업안전)
- 제 358 조(직업안전)
- 제 359 조(직업안전)
- 제 360 조(직업안전)
- 제 361 조(직업안전)
- 제 362 조(직업안전)
- 제 363 조(직업안전)
- 제 364 조(직업안전)
- 제 365 조(직업안전)
- 제 366 조(직업안전)
- 제 367 조(직업안전)
- 제 368 조(직업안전)
- 제 369 조(직업안전)
- 제 370 조(직업안전)
- 제 371 조(직업안전)
- 제 372 조(직업안전)
- 제 373 조(직업안전)
- 제 374 조(직업안전)
- 제 375 조(직업안전)
- 제 376 조(직업안전)
- 제 377 조(직업안전)
- 제 378 조(직업안전)
- 제 379 조(직업안전)
- 제 380 조(직업안전)
- 제 381 조(직업안전)
- 제 382 조(직업안전)
- 제 383 조(직업안전)
- 제 384 조(직업안전)
- 제 385 조(직업안전)
- 제 386 조(직업안전)
- 제 387 조(직업안전)
- 제 388 조(직업안전)
- 제 389 조(직업안전)
- 제 390 조(직업안전)
- 제 391 조(직업안전)
- 제 392 조(직업안전)
- 제 393 조(직업안전)
- 제 394 조(직업안전)
- 제 395 조(직업안전)
- 제 396 조(직업안전)
- 제 397 조(직업안전)
- 제 398 조(직업안전)
- 제 399 조(직업안전)
- 제 400 조(직업안전)
- 제 401 조(직업안전)
- 제 402 조(직업안전)
- 제 403 조(직업안전)
- 제 404 조(직업안전)
- 제 405 조(직업안전)
- 제 406 조(직업안전)
- 제 407 조(직업안전)
- 제 408 조(직업안전)
- 제 409 조(직업안전)
- 제 410 조(직업안전)
- 제 411 조(직업안전)
- 제 412 조(직업안전)
- 제 413 조(직업안전)
- 제 414 조(직업안전)
- 제 415 조(직업안전)
- 제 416 조(직업안전)
- 제 417 조(직업안전)
- 제 418 조(직업안전)
- 제 419 조(직업안전)
- 제 420 조(직업안전)
- 제 421 조(직업안전)
- 제 422 조(직업안전)
- 제 423 조(직업안전)
- 제 424 조(직업안전)
- 제 425 조(직업안전)
- 제 426 조(직업안전)
- 제 427 조(직업안전)
- 제 428 조(직업안전)
- 제 429 조(직업안전)
- 제 430 조(직업안전)
- 제 431 조(직업안전)
- 제 432 조(직업안전)
- 제 433 조(직업안전)
- 제 434 조(직업안전)
- 제 435 조(직업안전)
- 제 436 조(직업안전)
- 제 437 조(직업안전)
- 제 438 조(직업안전)
- 제 439 조(직업안전)
- 제 440 조(직업안전)
- 제 441 조(직업안전)
- 제 442 조(직업안전)
- 제 443 조(직업안전)
- 제 444 조(직업안전)
- 제 445 조(직업안전)
- 제 446 조(직업안전)
- 제 447 조(직업안전)
- 제 448 조(직업안전)
- 제 449 조(직업안전)
- 제 450 조(직업안전)
- 제 451 조(직업안전)
- 제 452 조(직업안전)
- 제 453 조(직업안전)
- 제 454 조(직업안전)
- 제 455 조(직업안전)
- 제 456 조(직업안전)
- 제 457 조(직업안전)
- 제 458 조(직업안전)
- 제 459 조(직업안전)
- 제 460 조(직업안전)
- 제 461 조(직업안전)
- 제 462 조(직업안전)
- 제 463 조(직업안전)
- 제 464 조(직업안전)
- 제 465 조(직업안전)
- 제 466 조(직업안전)
- 제 467 조(직업안전)
- 제 468 조(직업안전)
- 제 469 조(직업안전)
- 제 470 조(직업안전)
- 제 471 조(직업안전)
- 제 472 조(직업안전)
- 제 473 조(직업안전)
- 제 474 조(직업안전)
- 제 475 조(직업안전)
- 제 476 조(직업안전)
- 제 477 조(직업안전)
- 제 478 조(직업안전)
- 제 479 조(직업안전)
- 제 480 조(직업안전)
- 제 481 조(직업안전)
- 제 482 조(직업안전)
- 제 483 조(직업안전)
- 제 484 조(직업안전)
- 제 485 조(직업안전)
- 제 486 조(직업안전)
- 제 487 조(직업안전)
- 제 488 조(직업안전)
- 제 489 조(직업안전)
- 제 490 조(직업안전)
- 제 491 조(직업안전)
- 제 492 조(직업안전)
- 제 493 조(직업안전)
- 제 494 조(직업안전)
- 제 495 조(직업안전)
- 제 496 조(직업안전)
- 제 497 조(직업안전)
- 제 498 조(직업안전)
- 제 499 조(직업안전)
- 제 500 조(직업안전)

산업안전보건 (근로자 여러분 이것만)

1. 제 1 조(목적)

2. 제 2 조(정의)

3. 제 3 조(근로자의 안전·보건)

4. 제 4 조(안전·보건)

5. 제 5 조(안전·보건)

6. 제 6 조(안전·보건)

7. 제 7 조(안전·보건)

8. 제 8 조(안전·보건)

9. 제 9 조(안전·보건)

10. 제 10 조(안전·보건)

11. 제 11 조(안전·보건)

12. 제 12 조(안전·보건)

13. 제 13 조(안전·보건)

14. 제 14 조(안전·보건)

15. 제 15 조(안전·보건)

16. 제 16 조(안전·보건)

17. 제 17 조(안전·보건)

18. 제 18 조(안전·보건)

19. 제 19 조(안전·보건)

20. 제 20 조(안전·보건)

21. 제 21 조(안전·보건)

22. 제 22 조(안전·보건)

23. 제 23 조(안전·보건)

24. 제 24 조(안전·보건)

25. 제 25 조(안전·보건)

26. 제 26 조(안전·보건)

27. 제 27 조(안전·보건)

28. 제 28 조(안전·보건)

29. 제 29 조(안전·보건)

30. 제 30 조(안전·보건)

31. 제 31 조(안전·보건)

32. 제 32 조(안전·보건)

33. 제 33 조(안전·보건)

34. 제 34 조(안전·보건)

35. 제 35 조(안전·보건)

36. 제 36 조(안전·보건)

37. 제 37 조(안전·보건)

38. 제 38 조(안전·보건)

39. 제 39 조(안전·보건)

40. 제 40 조(안전·보건)

41. 제 41 조(안전·보건)

42. 제 42 조(안전·보건)

43. 제 43 조(안전·보건)

44. 제 44 조(안전·보건)

45. 제 45 조(안전·보건)

46. 제 46 조(안전·보건)

47. 제 47 조(안전·보건)

48. 제 48 조(안전·보건)

49. 제 49 조(안전·보건)

50. 제 50 조(안전·보건)

51. 제 51 조(안전·보건)

52. 제 52 조(안전·보건)

53. 제 53 조(안전·보건)

54. 제 54 조(안전·보건)

55. 제 55 조(안전·보건)

56. 제 56 조(안전·보건)

57. 제 57 조(안전·보건)

58. 제 58 조(안전·보건)

59. 제 59 조(안전·보건)

60. 제 60 조(안전·보건)

61. 제 61 조(안전·보건)

62. 제 62 조(안전·보건)

63. 제 63 조(안전·보건)

64. 제 64 조(안전·보건)

65. 제 65 조(안전·보건)

66. 제 66 조(안전·보건)

67. 제 67 조(안전·보건)

68. 제 68 조(안전·보건)

69. 제 69 조(안전·보건)

70. 제 70 조(안전·보건)

71. 제 71 조(안전·보건)

72. 제 72 조(안전·보건)

73. 제 73 조(안전·보건)

74. 제 74 조(안전·보건)

75. 제 75 조(안전·보건)

76. 제 76 조(안전·보건)

77. 제 77 조(안전·보건)

78. 제 78 조(안전·보건)

79. 제 79 조(안전·보건)

80. 제 80 조(안전·보건)

81. 제 81 조(안전·보건)

82. 제 82 조(안전·보건)

83. 제 83 조(안전·보건)

84. 제 84 조(안전·보건)

85. 제 85 조(안전·보건)

86. 제 86 조(안전·보건)

87. 제 87 조(안전·보건)

88. 제 88 조(안전·보건)

89. 제 89 조(안전·보건)

90. 제 90 조(안전·보건)

91. 제 91 조(안전·보건)

92. 제 92 조(안전·보건)

93. 제 93 조(안전·보건)

94. 제 94 조(안전·보건)

95. 제 95 조(안전·보건)

96. 제 96 조(안전·보건)

97. 제 97 조(안전·보건)

98. 제 98 조(안전·보건)

99. 제 99 조(안전·보건)

100. 제 100 조(안전·보건)

알고 계신가요? 사업주와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가 해야 할 일

- 산업재해조사표**
 -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 입원자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
- 안전·보건표지**
 - 유해·위험 사항과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조치 안내 등 안전·보건표지를 설치·부착
- 안전·보건교육**
 - 정기·산급 채용시·작업내용 변경 시·특별교육
- 방호장치 점검**
 - 유해하거나 위험할 수 있는 기계·기구 등의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점검
-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 근로자에게 화학물질 취급의 유해·위험성 알림
- 작업환경측정**
 - 사업장 작업환경 실태 파악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작업환경측정
- 근로자 건강진단**
 -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건강진단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 재해발생시 대비**
 - 산업재해의 발생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

근로자가 해야 할 일

- 안전·보건조치 사항 준수**
 - 유해·위험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조치사항을 준수
- 안전·보건교육**
 - 사업주가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참석
- 방호장치 상실 시 신고**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장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사업주에게 신고
- 위급상황 시 작업중지 및 대피**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 후 대피
 - 작업중지 후 대피하고 그 사실을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작성 : utsansafety

- 53 -

유해·위험방지 조치

제38조(안전조치) ①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기계, 기구,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물질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 ②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등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예방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한 우려가 있는 장소

제39조(보건조치) ①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 | |
|---|---|
| 1.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u>흙</u> , <u>미스트</u> , 산소결핍, 병원체 등 | 2. 방사선, 유해광선,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
|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액체 또는 찌꺼기 등 | 4.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 작업 |
| 5. 단순반복작업, 인체에 과도한 부담작업 | 6. 환기, 채광, 조명, 보온, 방습, 청결 등의 적정기준 유지 |

☞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과태료: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

근로자는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편 안전기준

제2편 안전기준

제3편 보건기준

**제4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5. 28.] [고용노동부령
제321호, 2021. 5. 28., 일부개정]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장 작업장

제3조(전도의 방지)

제4조(작업장의 청결)

제4조의2(분진의 흩날림 방지)

제5조(오염된 바닥의 세척 등)

제6조(오물의 처리 등)

제7조(채광 및 조명)

제8조(조도)

제9조(작업발판 등)

제10조(작업장의 창문)

제11조(작업장의 출입구)

제12조(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조건)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15조(투하설비 등)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

제17조(비상구의 설치)

제18조(비상구 등의 유지)

제19조(경보용 설비 등)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제3장 통로

제21조(통로의 조명)

제22조(통로의 설치)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제25조(강내통로 등의 위험 방지)

제26조(계단의 강도)

제27조(계단의 폭)

제28조(계단참의 높이)

제29조(천장의 높이)

제30조(계단의 난간)

제4장 보호구

제31조(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제33조(보호구의 관리)

제34조(전용 보호구 등)

제5장 관리감독자의 직무, 사 용의 제한 등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

제36조(사용의 제한)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
성 등)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제40조(신호)

제41조(운전위치의 이탈금지)

제6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

제1절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제42조(추락의 방지)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제46조(승강설비의 설치)

제47조(구명구 등)

제48조(울타리의 설치)

제49조(조명의 유지)

제2절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 지

제50조(붕괴·낙하에 의한 위험 방지)

제51조(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
물 등의 안전 유지)

제52조(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
물의 안전성 평가)

제53조(계측장치의 설치 등)

제7장 비계

제1절 재료 및 구조 등

제54조(비계의 재료)

제55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제2절 조립·해체 및 점검 등

제57조(비계 등의 조립·해체 및 변경)

제58조(비계의 점검 및 보수)

제3절 강관비계 및 강관틀비계

제59조(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

제60조(강관비계의 구조)

제61조(강관의 강도 식별)

제62조(강관틀비계)

제4절 달비계, 달대비계 및 걸침 비계

제63조(달비계의 구조)

제64조(달비계의 점검 및 보수)

제65조(달대비계)

제66조(높은 디딤판 등의 사용금지)

제66조의2(걸침비계의 구조)

제5절 말비계 및 이동식비계

제67조(말비계)

제68조(이동식비계)

제6절 시스템 비계

제69조(시스템 비계의 구조)

제70조(시스템비계의 조립 작업 시 준
수사항)

제7절 통나무 비계

제71조(통나무 비계의 구조)

제8장 환기장치

제72조(후드)

제73조(덕트)

제74조(배풍기)

제75조(배기구)

제76조(배기의 처리)

제77조(전체환기장치)

제78조(환기장치의 가동)

제9장 휴게시설 등

제79조(휴게시설)

제79조의2(세척시설 등)

제80조(의자의 비치)

제81조(수면장소 등의 설치)

제82조(구급용구)

제10장 잔재물 등의 조치기준

제83조(가스 등의 발산 억제 조치)

제84조(공기의 부피와 환기)

제85조(잔재물등의 처리)

제2편 안전기준

제342조(굴착기계 등의 사용금지)
제343조(운행경로 등의 주지)
제344조(운반기계등의 유도)
제345조(흙막이지보공의 재료)
제346조(조립도)
제347조(붕괴 등의 위험 방지)

제2관 발파작업의 위험방지

제348조(발파의 작업기준)
제349조(작업중지 및 피난)

제3관 터널작업

제350조(인화성 가스의 농도측정 등)
제351조(낙반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352조(출입구 부근 등의 지반 붕괴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353조(시계의 유지)
제354조(굴착기계의 사용 금지 등)
제355조(가스제거 등의 조치)
제356조(용접 등 작업 시의 조치)
제357조(점화물질 휴대 금지)
제358조(방화담당자의 지정 등)
제359조(소화설비 등)
제360조(작업의 중지 등)
제361조(터널 지보공의 재료)
제362조(터널 지보공의 구조)
제363조(조립도)
제364조(조립 또는 변경시의 조치)
제365조(부재의 해체)
제366조(붕괴 등의 방지)
제367조(터널 거푸집 동바리의 재료)
제368조(터널 거푸집 동바리의 구조)

제4관 교량작업

제369조(작업 시 준수사항)

제5관 채석작업

제370조(지반붕괴 위험방지)
제371조(인접채석장과의 연락)
제372조(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제373조(낙반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제374조(운행경로 등의 주지)
제375조(굴착기계등의 유도)

제6관 잠함 내 작업 등

제376조(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 방지)
제377조(잠함 등 내부에서의 작업)
제378조(작업의 금지)

제7관 가설도로

제379조(가설도로)

제3절 철골작업 시의 위험방지

제380조(철골조립 시의 위험 방지)
제381조(승강로의 설치)
제382조(가설통로의 설치)
제383조(작업의 제한)

제4절 해체작업시의 위험방지

제384조(작업중지)

제5장 중량물 취급 시의 위험방지

제385조(중량물 취급)
제386조(경사면에서의 중량물 취급)

제6장 하역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1절 화물취급 작업 등

제387조(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

제388조(사용 전 점검 등)

제389조(화물 중간에서 화물 빼내기 금지)

제390조(하역작업장의 조치기준)

제391조(하적단의 간격)

제392조(하적단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393조(화물의 적재)

제2절 항만하역작업

제394조(통행설비의 설치 등)

제395조(급성 중독물질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제396조(무포장 화물의 취급방법)

제397조(선박승강설비의 설치)

제398조(통선 등에 의한 근로자 수송 시의 위험 방지)

제399조(수상의 목재·땃목 등의 작업 시 위험 방지)

제400조(베일포장화물의 취급)

제401조(동시 작업의 금지)

제402조(양하작업 시의 안전조치)

제403조(흑부착슬링의 사용)

제404조(로프 탈락 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7장 벌목작업에 의한 위험방지

제405조(벌목작업 시 등의 위험 방지)

제406조(벌목의 신호 등)

제8장 궤도 관련 작업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제1절 운행열차 등으로 인한 위

험방지

제407조(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제408조(열차통행 중의 작업 제한)

제409조(열차의 점검·수리 등)

제2절 궤도 보수·점검작업의 위험 방지

제410조(안전난간 및 울타리의 설치 등)

제411조(자재의 붕괴·낙하 방지)

제412조(접촉의 방지)

제413조(제동장치의 구비 등)

제3절 입환작업 시의 위험방지

제414조(유도자의 지정 등)

제415조(추락·충돌·협착 등의 방지)

제416조(작업장 등의 시설 정비)

제4절 터널·지하구간 및 교량 작업 시의 위험방지

제417조(대피공간)

제418조(교량에서의 추락 방지)

제419조(발침목교환작업 등)

제3편 보건기준

제1장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420조(정의)

제421조(적용 제외)

제2절 설비기준 등

제422조(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제5절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제603조(예방 조치)

제604조(노출 후 관리)

제9장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 의 예방

제1절 통칙

제605조(정의)

제606조(적용 제외)

제2절 설비 등의 기준

제607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제608조(전체환기장치의 설치)

제60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제610조

제611조(설비에 의한 습기 유지)

제3절 관리 등

제612조(사용 전 점검 등)

제613조(청소의 실시)

제614조(분진의 유해성 등의 주지)

제615조(세척시설 등)

제616조(호흡기보호 프로그램 시행 등)

제4절 보호구

제617조(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제10장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 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618조(정의)

제2절 밀폐공간 내 작업 시의 조치 등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램의 수립·시행)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제620조(환기 등)

제621조(인원의 점검)

제622조(출입의 금지)

제623조(감시인의 배치 등)

제624조(안전대 등)

제625조(대피용 기구의 비치)

제626조

제3절 유해가스 발생장소 등에 대한 조치기준

제627조(유해가스의 처리 등)

제628조(소화설비 등에 대한 조치)

제629조(용접 등에 관한 조치)

제630조(불활성기체의 누출)

제631조(불활성기체의 유입 방지)

제632조(냉장실 등의 작업)

제633조(출입구의 임의잠김 방지)

제634조(가스배관공사 등에 관한 조치)

제635조(압기공법에 관한 조치)

제636조(지하실 등의 작업)

제637조(설비 개조 등의 작업)

제4절 관리 및 사고 시의 조치 등

제638조(사후조치)

제639조(사고 시의 대피 등)

제640조(긴급 구조훈련)

제641조(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

제642조(의사의 진찰)

제643조(구출 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
기마스크의 사용)

제644조(보호구의 지급 등)

제645조

제11장 사무실에서의 건강장 해 예방

제1절 통칙

제646조(정의)

제2절 설비의 성능 등

제647조(공기정화설비등의 가동)

제648조(공기정화설비등의 유지관리)

제3절 사무실공기 관리와 작업 기준 등

제649조(사무실공기 평가)

제650조(실외 오염물질의 유입 방지)

제651조(미생물오염 관리)

제652조(건물 개·보수 시 공기오염
관리)

제653조(사무실의 청결 관리)

제4절 공기정화설비등의 개·보 수 시 조치

제654조(보호구의 지급 등)

제655조(유해성 등의 주지)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656조(정의)

제2절 유해요인 조사 및 개선 등

제657조(유해요인 조사)

제658조(유해요인 조사 방법 등)

제659조(작업환경 개선)

제660조(통지 및 사후조치)

제661조(유해성 등의 주지)

제662조(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
그램 시행)

제3절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
한 특별 조치

제663조(중량물의 제한)

제664조(작업조건)

제665조(중량의 표시 등)

제666조(작업자세 등)

제13장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667조(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에 대
한 조치)

제668조(비전리전자기파에 의한 건강
장해 예방 조치)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
해 예방 조치)

제670조(농약원재료 방제작업 시의 조
치)

제671조

제4편 특수형태근로종사 자 등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672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673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등)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 과태료: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1천만원

- ①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품의 판매, 서비스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예방조치)

법 제41조제2항에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3.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4. 관할 수사기관, 법원에 증거 제출 등 관련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지원

시행규칙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사업주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폭언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3.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4. 그 밖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유해·위험방지 조치(1)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 등)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1.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
2.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계,기구,설비를 설치 및 이전, 변경시
3. 시행령에서 정하는 건설공사 착공 시

유해·위험성을 사전에 평가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작성의무 부과하고,
정부(안전보건공단 위탁)가 심사·확인제도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1. 시행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한 설비 (7개 업종 적용)
2. 시행령 [별표 13]에 규정한 유해위험물질 관련한 공정설비

화재, 폭발, 누출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 부과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제47조(안전보건진단)

1. 장관은 추락·붕괴, 화재·폭발, 유해·위험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명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에 진단기관에 의한 진단을

받도록 명령하는 제도

제48조(안전보건진단기관)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

1. 동종업종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 이상 사업장
2.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4. 유해인자 노출기준 초과한 사업장

재해다발 또는 작업환경 불량
사업장에 대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는 제도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제출 등)

- (목적)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
- (대상위험 및 작업)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위험으로서 모든 작업에 해당
 - * 예) ▶ 건물의 균열 등 붕괴위험 ▶ 화학설비에서의 유독물 또는 압력방출 등 설비의 파괴 위험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추락위험 등
- ✓ **사업주의 작업중지 (법 제51조)**
 - 사업주는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근로자의 작업중지 (법 제52조)** ➡ **강화조항 (근로자 작업중지권 명확화)**
 -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보고 받으면,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 하여야 한다
 -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유해·위험방지 조치(2)

- ✓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명령)
 1.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때
 2. 시정조치 명령사항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
 3. 시정조치 이행하지 않을 때, 작업의 전부/일부의 중지 할 수도
 4. 시정조치 완료한 때, 사용중지/작업중지 해제 요청
- ✓ 제54조(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의 조치)
 1. 즉시 해당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
 2. 지체 없이 관할 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보고
- ✓ 제55조(중대재해 발생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1. 사고발생 작업의 중지 명령 (해당 작업, 동일한 작업)
 2. 해당 작업장의 작업을 중지(붕괴, 화재, 폭발, 위험물질의 누출)
 3. 해제 요청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 거쳐 작업중지 해제해야
- ✓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1. 장관은 중대재해 원인규명 및 예방대책 수립 위해 조사할 수 있다
 2.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 할 수 있다.
 3. 사고현장 훼손, 사고조사 방해해서는 안됨
- ✓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1. 산업재해 발생사실 은폐해서는 안됨, 기록보존, 해당 건 보고

* 기록내용 : 사고개요,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원인 및 과정, 재발방지 계획

<1>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시행규칙 제73조: 사망하거나 3일 이상 휴업 재해)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함

<2> 산재신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및 제41조) 업무로 기인하여 4일 이상의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자가 신청(의무사항 아님)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1)

✓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1.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
2. 지정한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의 안전총괄책임자로 본다.
3. 대상: 건설업-총공사금액 20억이상, 제조업-상시근로자 100명이상
* 단, 조선업, 1차 금속 제조업, 토사석 광업은 50인 이상

✓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강화 조항

- 도급인은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 단,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보호구착용 등) 관련 직접 조치는 제외

✓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1. 도급인과 수급인으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매월 1회 이상, 기록)
2. 작업장 순회점검 (2일에 1회 이상, 위임가능)
3.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교육장소 및 자료의 제공
4. 관계수급인 근로자 안전교육의 실시 확인
5.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훈련(발파작업, 화재폭발, 붕괴, 지진 대비)
6. 위생시설의 설치장소 제공 또는 도급인 시설 이용 협조

개정 사유(배경)

-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도급인지, 같은 장소에서 작업했는지, 22개 위험발생 장소 여부 등 사안마다 법 적용에 논란 발생
- ▶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장소, 시설 등의 위험에 지배관리권 있다면 **도급유형, 위험장소 여부** 등을 불문하고 책임 부과 타당
- ▶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해 직접 지시 시 불법파견 소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2)

✓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1.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보건 **정보**를 문서로 제공

-> **정보**는 유해성·위험성,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위험물질 누출시 조치 내용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내부에서 하는 작업

* 질식, 봉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시행령 제54조 참조)

2. 수급인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하여 함

✓ 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1.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 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신설조항**

1.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시공 단계에서

1) **계획단계** : 해당 건설공사의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2) **설계단계** : 설계자가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

3) **시공단계** : 최초 도급 수급인에게 제공, 이를 반영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하게 하고, 이행여부를 확인

2. 대장에 포함될 사항은 "**시행규칙 제86조**" 및 "**고시**"내용 참조

신설 사유(배경)

- 발주자는 공사계획·설계·시공 등 **건설사업** **전 과정**에서 공사 기간 등을 결정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치므로 설계단계부터 산업재해 예방조치 고려 필요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3)

- ✓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1.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 작업혼재로 인한 화재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정자 두어야 함
 2. (선임대상) 건설공사 금액 합이 50억원 이상 (자격기준) 산업안전지도사, 공사감독자, 책임감리자, 기술자격자 등
- ✓ 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1. 설계도서에서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안됨
 2.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 있는 공법 사용, 정해진 공법 변경금지
- ✓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1. 발주자는 장관 고시하는 바에 따라, 도급금액/사업비에 계상해야 함
 2. 선박 건조/수리 최초 수급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함
 3. 수급인은 관리비를 산재예방 외 목적으로 사용 금지
- ✓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1. 도급인은 건설공사 “전문지도기관”에서 산재예방 지도 받아야 함
 - * 대상: 건설공사 120억 미만, 토목공사 150억 미만, 건축허가 대상공사
- ✓ 제76조(기계·기구 등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1. 설치·해체·조립시 안전조치: 타워크레인, 리프트, 항타기가 대상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4)

✓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근로기준법 적용 안됨)의 노무를 제공 받는 자는 이 종사자의 산재예방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해야 함

* 보험설계사, 우체국보험모집인, 건설기계 직접 운전하는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 집화·배송인, 서비스, 대출모집인, 대리운전자 등

2. 이 종사자의 노무를 제공 받는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1.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을 수거·배달 중개하는 자는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배달하는 자에게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해야 함

✓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1.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재예방 위한 다음 조치 해야 함
 - 가맹점의 안전·보건 관한 프로그램의 마련, 시행
 -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설비·기계·원자재·상품 관련 안전보건 정보제공
2. 적용 가맹본부: 가맹점 수가 200개 이상인 외식업, 편의점 (도소매업)

유해·위험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제2절 안전인증(기준, 표시, 취소, 인증기관)

제3절 자율안전확인신고

제4절 안전검사

제5절 유해·위험 기계 등의 조사 및 지원 등

1. 유해, 위험 기계·기구의 방호조치 (제1절) : 누구든지 [위 방호장치 없는 경우는 :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 안됨]

- 대상 6종(시행령 [별표20]) :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포장기계
- 특정부분 안전조치 : 작동 돌기부분(물힘형, 덮개), 동력 전달부분(덮개, 방호망), 회전기계 물림점 (덮개, 울)

2. 안전인증 (제2절) : 제조자, 수입자

- 구분 : 위험도가 높아 전반적인 안전 성능과 기술능력 및 생산 체계에 대한 인증 필요

3. 자율안전확인신고 (제3절) : 제조자, 수입자

- 구분 : 어느 정도 기술이 보편화되어 위험도가 낮은 경우, 자체적으로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신고

4. 안전검사 (제4절) : 사용 사업주

- 구분 : 위험도 높은 기계·기구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 실시(정기검사 + 자체검사)

유해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

시행령
제70조
[별표20
]

예초기	날접촉예방장치	
원심기	회전체 접촉예방장치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	
금속절단기	날접촉 예방장치	
지게차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진공포장기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고정식 방호가드 (연동회로의 구성이 관련한 부위)	
랩핑기		

- 동력전달 및 속도전달부분에는 덮개 또는 방호망 설치
- 회전기계의 물림점에는 덮개 또는 울설치
- 작동부분 돌기부분은 문힘형으로 하거나 덮개 설치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 기준, 유해성평가, 노출기준, 허용기준, 유해성·위험성 조사, MSDS 등

제2절 석면에 대한 조치

- 조사, 조사기관, 해체·제거, 작업기준 등

1. **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제107조) ☞ 대상물질은 시행령 [별표 26]
 - 발암물질 등 중대한 건강장해 유발 우려있는 유해인자(38종)의 노출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
2.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108조)
 -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조사,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제110조)
4. **제조, 수입 등이 금지된 유해물질** (제117조)
 - 누구든지 제조 등이 금지된 물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해서는 안됨
5. **유해물질의 제조허가** (제118조)
 - 허가 대상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6. **석면 조사** (제119조)
 -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 등의 철거·해체 작업 전에 소유주 또는 임차인은 석면함유 여부를 조사
7. **석면 해체·제거 작업** (제122조)
 - 석면해체·제거업자(등록업체)를 통해 작업하고, 작업 시작 전 신고의무

- ▶ (의의) 근로자에게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 을 알려줌으로써 화학물질 취급 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나 직업병을 사전에 예방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MSDS를 작업장 내에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하고,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물리적 위험성(폭발성, 인화성 등), 건강 및 환경 유해성(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의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
 -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재대상 : 1. 제품명, 2.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물리적 위험성, 건강 및 환경 유해성의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물리, 화학적 특성 등(독성에 관한 정보, 폭발, 화재 시의 대처 요령, 응급조치 요령)
- * 과태료 : 미게시 대상 화학물질 1종 당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
미교육 근로자 1명 당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300만원
-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근로자의 보건관리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측정, 측정기관, 신뢰성평가, 연구기관 지정)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일반진단, 특수진단, 임시진단 명령, 사업주 /근로자 의무, 진단기관의 결과보고, 질병자 근로제한, 취업제한, 역학조사)

1. **작업환경측정 (제 125조)** -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보호,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2. **일반건강진단 (제 129조), 특수건강진단 (제 130조)**
 -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 사업주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시,
 - 사후조치로 야간근로자 추가(특수건강진단 실시)
3. **건강관리카드 (제 137조)**
 - 건강장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업무 관련 직업성질환의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
4.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제 138조)**
 - 감염병, 정신병 등에 걸린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
5. **유해·위험작업 근로시간 제한 (제 139조)** 1일 6시간, 1주 34시간 초과 금지 (예, 잠수작업)
6. **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제 140조)**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 *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은 ~~규칙 [별표1]에서 22개 작업별 규정
 - 예)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제조/취급작업, 방사선 취급작업, 이동식 크레인 등
7. **역학조사 (제 141조)** -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 고용노동부장관 실시

근로자 건강진단

- ▶ (의의) 근로자들은 작업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유해인자에 노출됨으로써 직업성 질환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건강진단을 통해 직업성 질환을 초기에 찾아내어 진행을 사전에 예방

구분	내 용
일반건강진단	모든 근로자 대상(사무직 2년에 1회, 그 밖의 근로자 1년에 1회 이상)
특수건강진단	직업병 발생 원인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직업병 유소견자 판정 근로자,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 필요 의학적 소견 있는 근로자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종사 근로자 배치 전 실시
수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로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 의심 증상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 있는 근로자

* 위반 시 과태료 : 대상 근로자 1명 당 1차 위반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 건강진단 결과 조치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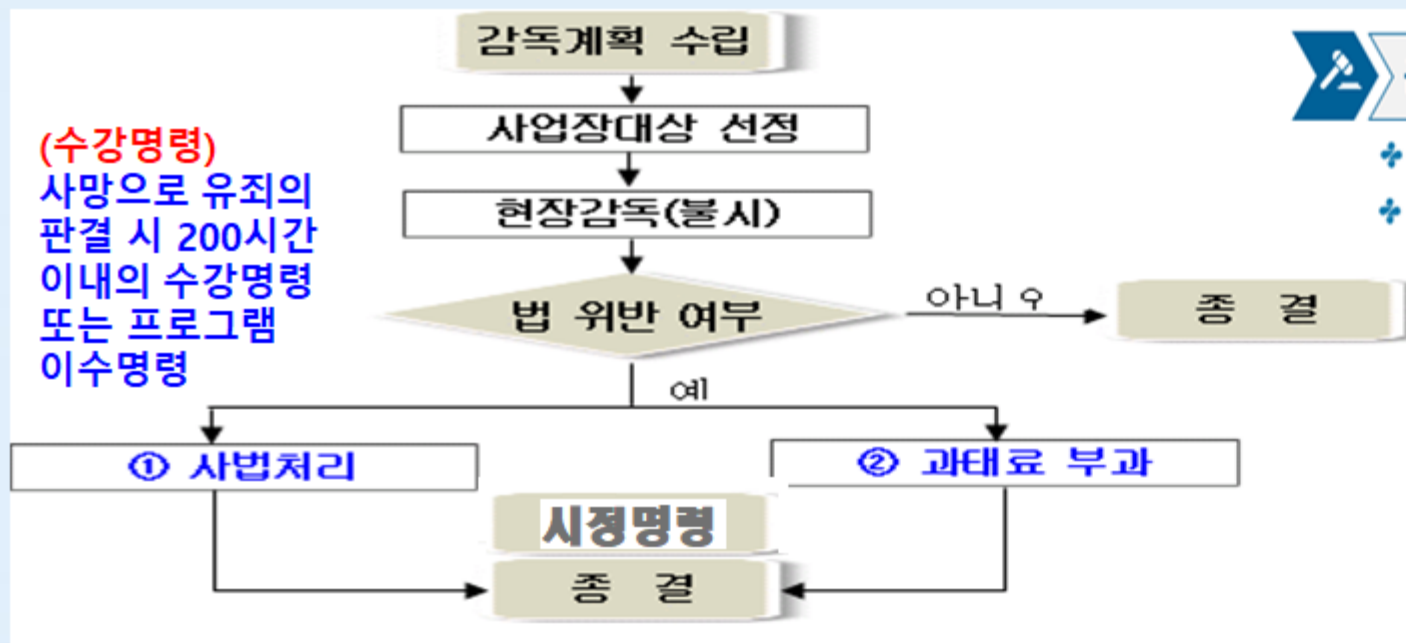
-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 설비의 설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벌칙(제167조~제172조), 양벌규정(제173조), 형벌과 수강명령 병과(제174조), 과태료(제175조)

① 사법처리(행정형벌) : 징역형·금고형·벌금형 등이 있음

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의 수사 ⇒ 사건송치 ⇒ 검사의 기소 ⇒ 법원의 재판의 절차를 거쳐 확정

② 과태료 부과(행정질서벌) : 과태료와 범칙금이 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 부과·징수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 및 도급인 처벌강화(시행일 : 2020.1.16)

✦ 사업주 및 도급인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형 확정 후 5년 이내 반복위반 시 형의 ½까지 가중 (신설)

(양벌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규정을 이행해야 하는 자는 대부분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대표)이며, 사업주는 통상 법인인 경우가 일반적임
☞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업주(법인 또는 대표)외에 법 위반 행위자(법인의 대표자 또는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의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과태료 부과기준(개별기준 제외)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 부과기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 나. (가중된 부과처분 시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의 다음 차수
- 다. (개별기준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는 비해당
 -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2)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감경되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총액) 개별기준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음
- 마. (개별기준 과태료 부과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감경기준 미적용. 다만, 감경하여 100만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부과

2. 특정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가. 중대재해 나. 중대산업사고)에 대하여 발생원인 조사 또는 감독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별기준 중 3차 이상 위반 시의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3. 사업장 규모 또는 공사 규모에 따른 감경기준

- 가. 상시근로자 50명(10억원) 이상 100명(40억원) 미만: 100분의 90
- 나. 상시근로자 10명(3억원) 이상 50명(10억원) 미만: 100분의 80
- 다. 상시근로자 10명(3억원) 미만: 100분의 70



감사합니다